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51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전재수·채현일·박해철

이학영 · 김영호 · 송기헌

허 영・김정호・신영대

위성곤 · 김기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수소 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 를 2025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아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이 안정적으로 확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5년" 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8조의11 및	제2조(유효기간)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u>2025</u>	<u>2028</u>		
<u>년</u>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u>년</u>		
다.	<u>.</u>		